



재해 개요

- 2023. 6. 27.(화) 11:20경, 경기도 □□시 소재 「○○○」에서 △△△ 소속 재해자와 동료 작업자가 의료장비 테이블의 상승·하강 구동 부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던 중 테이블이 하강하여 테이블과 바닥 사이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끼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Safety Stopper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**
 - 작업매뉴얼 상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테이블이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·수리 등의 작업시작 전에 안전장치(Safety Stopper)를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안전장치(Safety Stopper)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였으며,
 - 이로 인해 테이블이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던 기어박스가 해체되는 순간 테이블이 불시 하강하면서 테이블 하부에서 작업하고 있던 재해자가 테이블과 바닥 사이에 끼임



재해 예방 대책

- 점검·수리 등의 작업 시 작업매뉴얼 준수**
 - 점검·수리 등의 작업하는 경우 작업 매뉴얼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, 테이블의 점검·수리 등의 작업 시 작업자에게 끼임, 충돌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장치(Safety Stopper)를 설치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테이블이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